

문서번호	BSKS-1-1-31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5

2012.02.01.제정 2012.03.02.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12.22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30조에 의한 자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(이하 "자퇴"라 한다)하는 자를 말하며,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.
- 제3조(자퇴절차)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호자 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각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한다.
 - 1. 자퇴원[별지 제1호 서식] 작성(보호자 도장 날인)
 - 2. 사무처 등록확인
 - 3. 국가장학금 신청확인 <개정 2019.07.16.>
 - 4. 지도교수에게 자퇴원 제출 <호번호 변경 2019.07.16.>
 - 5. 지도교수 승인 및 보호자 의사 확인 <호번호 변경 2019.07.16.>
 - 6. 교무처에 제출 <호번호 변경 2019.07.16.><개정 2020.09.25.>
 - 7. 교무처장 승인 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.>
- 제3조의1(자퇴의 제한) ① 자퇴를 신청한 재학생에 대해 30일 이내의 자퇴 숙려기간을 두어 별도의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.
 - ② 자퇴 숙려기간동안 재학생과의 상담이 완료된 후 자퇴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21.12.22.>
- 제4조(자퇴생의 등록금처리)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은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통장사본을 자퇴원에 첨부하여야 한다. 자퇴생의 등록금 처리는 본교 '등록에 관한 규정'을 준용한다
 - 1. 삭제 <2012.03.02.>
 - 2. 삭제 <2012.03.02.>



문서번호	BSKS-1-1-31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1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	문서번호	BSKS-1-1-31
	제정일자	2012.02.01.
Ž	희종개정일자	2022.04.15.
	페이지 수	4/5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0.09.25.>

남전	과상	저상

자 퇴 원

위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보호자 연명으로 자퇴원을 제출하오니 자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1						
성	명			학 번		생 년 월 일	년	월 일
학	과		과/계열	학년.반		재학상태	(재학,	휴학중)
자퇴 (O <u>3</u>			2.경제사정(7.직장(취업)관) 3.건강사 ⁷ }련() 8.군) 5.어학연수((적성 및 적응 미		기타(※내용을
국가전 확	장학금 인	국가장학금 수혜금액 / 확인	(₩ 확인자), (인)	국가학자금(대출) (해당학기/총액)	- 학기/(대출 없음	₩ 확인자), (인)
전산 일	입력 자		사 무 처 등록확인	확인자	- 학기등	등록필 도서대출 (인) 확인	. Mai	(인)

	0 1 1 1 1	(L)	
[지도교수 상담내용]			
보호자 의견 :			
지도교수 확인 :	⑩ / 학생상담센터 상담 필요 여부() / 학생상담센터 상담자 :	@
[학과/계열장 상담내용]			
학과/계열장 확인 :	<u></u>		

※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도교수의 확인(√)이 있을 경우

교수학습센터 상담을 받은 후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해 주세요

※ 첨부서류 :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(납입금 반환 해당자만 첨부) /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 통장 사본 1부.

년 월

본 인: (인) / [연락처: 보호자:

(인) / [연락처: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자 퇴 확 인 서

학 번	성 명			생 년 월 일	년	월	일
학 과	과/계열	학년 , 반	() 학년 () 반	(재학생)	(Ē) O F 🔿 T 1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 녉 월

무 처 장 亚

< 유의사항 >

- 1. 납입금의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본교 '등록에 관한 규정'에 의거 반환해 드립니다. ☎ 문의 : 051) 850 1028 2.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. 3. 자퇴 처리기간은 3일 ~ 7일이며, 본교 홈페이지(bsks.ac.kr)의 학사종합서비스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1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5

	자퇴생 지도 내	<u>Q.</u> <u>Ö</u>	
학 과 : 학 번 : 이 름 :			
학생상담센터 상담내용			
	한생산단	·센터 상담자 :	(1)
학과 교수 상담내용	100д	ш-1 од-1	
	학과 / 계열장	①	
	교 수	(1)	
	교 수	(1)	